항만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78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 · 위치 · 구역 등)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제3장 항만의 개발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제14조(항만공사의 대행)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제17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제19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0조(항만의 관리)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제22조(항만대장)

제23조(항만관리법인)

제24조(항만시설관리권)

제25조(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제26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27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28조(금지행위 등)

제28조(금지행위 등)

제29조(환경실태조사)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제32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제3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제37조(신기술의 활용)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39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1절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

제44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5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제48조(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제49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53조(선수금)

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5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제57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58조(준공확인)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제60조(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 운영

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6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67조(관리기관의 업무)

제6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제69조(입주자격)

제70조(우선입주)

제71조(입주계약)

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

제73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75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76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

제77조(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비)

제78조(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제79조(비용부담 원칙)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제81조(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82조(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제7장 감독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85조(보고 및 검사)

제86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8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8조(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제89조(토지 등의 수용)

제90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9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92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93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장 보칙

제96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제97조(행위 제한 등)

제98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99조(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00조(청문)

제101조(권리 · 의무의 이전)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제10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105조(수수료)

제106조(조세감면)

제10장 벌칙

제107조(벌칙)

제108조(벌칙)

제109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1조(양벌규정)

제1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3조(과태료)

항만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78호, 2023. 10. 2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운영) 044-200-5755, 5756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항만시설의 사용) 044-200-5775, 5781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 항만제도 일반) 044-200-5920, 5921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044-200-59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2022. 1. 4., 2023. 10. 24.>

-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 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 4. "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가. 기본시설

- 1)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 2)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 외곽시설
- 3)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 4) 안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 선착장,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나, 기능시설

- 1)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 3) 대기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시멘트, 곡물 등 산적화물(散積貨物)의 저장 시설을 말한다], 유류(油類)저장시설,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 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 6) 항만의 관제(管制)・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 7) 항만시설용 부지
- 8)「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9)「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10) 방음벽, 방진망(防塵網), 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 다. 지원시설

-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항만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 등「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 7)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 교육 시설
-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造景)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浚渫土)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 마. 항만배후단지
- 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시설
- 6. "관리청"이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 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 나.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7.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개축・보강・유지・보수(補修)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8. "항만물류"란 항만에서 화물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및 포장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 9.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란 관리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자가 항만물류비의 절감 및 각종 정보의 실시간 획득 등을 위하여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 10.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란 관리청 및 항만개발사업 관련자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와 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계획・설계・계약・시공・유지 및 관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 11. "항만배후단지"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1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13.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14.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 15. "입주기업체"란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위치・구역 등) ① 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무역항
- 2. 연안항
- 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 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 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 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③ 연안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 만
-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24.>

- 1. 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 2. 제3조에 따른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 3.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5. 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 6.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8. 제49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9. 다른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10. 그 밖에 항만의 개발・정비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수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심의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의 장 소속으로 지방항만심의회를 둔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 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 2. 1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①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 2. 항만의 관리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 4. 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 5.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
- 6. 항만시설의 용도, 기능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7.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 8.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항만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 동량 수요 예측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 개발·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항만의 개발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개정 2020. 2. 18.>

-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2. 18.>
- 1.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을 유지・보수하는 항만개발사업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만개발사업
 -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항만시설 중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 · 교체하는 항만개발사업일 것
 - 나.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일 것
-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2022. 1. 4.>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가. 항만기본계획
 - 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 다. 「신항만건설 촉진법」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2. 항만의 관리 운영상 항만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
- 3.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 4. 화물의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할 것
- 5.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
-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
-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 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2. 18.>
- ⑥ 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허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1. 4.>
- ⑦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 ⑧ 관리청은 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의 항만개발사업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적격자 중에서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 ⑨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 본문,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관리청 또는 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수립한 항만개 발사업실시계획의 경우에는 관리청이 공고한다. <개정 2020, 2, 18,>
 -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2022. 1. 4.>
 - ③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및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한 후 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작성·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 1.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 항만개발사업계획에 적합할 것
- 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 3.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환경영향평가법」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사항을 충족할 것
- ⑤ 비관리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승인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⑦ 관리청은 제2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4.>
-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을 착수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준공하여 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2. 12. 27.>
-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 ② 비관리청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개발사업을 끝내면 지체 없이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 ③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받은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항만개발사업이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비관리청에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0. 2. 18.>
 - ④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거나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 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 2. 18.>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기 전이나 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2. 18.>
 - ⑥ 관리청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관리청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항만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보고 항만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제14조(항만공사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할 항만개발사업 중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2020. 2. 18.>
 - ②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관리청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본문에 따라 허가한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을 그 비관리청의 비용 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제목개정 2020. 2. 18.]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 ②「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그 재원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에 귀속된다.
 - ③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준공 전 사용기간을 산입한다.<개정 2022. 1. 4.>
 - ④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을 성실 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 ⑤ 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① 비관리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 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 4.>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는 「국유재산법」제44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 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 4.>
- 제17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4., 2022. 12. 27.>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2. 27.>
- 제19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 1, 4, 2023, 10, 24,>
 - 1.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날(비관리청의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 2.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 4. 비관리청이 분양 등을 목적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시획의 승인을 받아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양도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리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4.>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시·도에 기부채납한 자는 기부한 재산의 가액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 4.>
-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기부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 4.>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 4.>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 **제20조(항만의 관리)** ① 관리청은 무역항과 연안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0. 2. 18.>
 - ②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 4.>
-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1. 상업항구(商業港區)
 - 2. 공업항구(工業港區)
 - 3. 어항구
 - 4. 여객항구(旅客港區)
 - 5. 보급(補給) 및 지원항구(支援港區)
 - 6. 위험물항구(危險物港區)
 - 7. 보안항구(保安港區)
 - 8. 위락항구(慰樂港區)
 - 9. 친수항구
- 제22조(항만대장) ① 관리청은 항만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 ② 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항만관리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②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항만시설관리권)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 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②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저당권이 설정된 항만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 제25조(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 4.>
 - ② 항만시설관리권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관리청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2022. 1. 4.>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 ⑤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異議)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 제26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이용자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에서 정하는 표준화된 서식이나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와 항만물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③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장애 등으로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7.>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 ⑤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로, "항만물류 관련 업무"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업무"로 본다.<개정 2022. 12. 27.>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27.>
-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 4.>
 - 1.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 2.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개정 2022. 1. 4.>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4.>
- 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6.>

-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 4.>
- 1.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 2.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개정 2022. 1. 4.>
-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4.>
- 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8. 7.] 제28조

- 제29조(환경실태조사) ① 정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범위·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① 이 법,「해운법」및「항만운송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만사업자"라 한다)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항만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있다.
-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 (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4.>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자체점검기록과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 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 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20. 2. 18.>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 1. 「전기사업법」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장비관리자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 검사를 한 후 검사성적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 2. 18.>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②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 ③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검사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검사기준에서 정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증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사증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회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받아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 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항만개발사업을 설계하거나 시공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진 설계(耐震設計) 기준에 맞게 설계하거나 시공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기술기준의 관리 및 운영
- 2. 기술기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 3.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
- 4. 국제 기술기준 관련 제도・정책의 동향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7조(신기술의 활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법」및「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의 항만개발사업에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 대상 등은 평가를 거쳐 정하며, 그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관리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신기술의 적용으로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0. 24.>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 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 2. 제1호 외의 항만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국가 또는 시·도가 소유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 제39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① 항만건설작업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를 고 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선박안전법」제 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 ② 항만건설장비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제2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선박안전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 1항에 따른 검사 중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
 - 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
-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2. 1. 4.>
 - 1. 관리청[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것
 - 2.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 3.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을 것
- ②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고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2. 18.>
-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① 관리청,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② 관리청은「해운법」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항만시설 사용자를 대리하여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 산정 시 고려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1. 4.>
-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①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 ② 관리청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방법과 사용료의 요율 등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방법의 변경, 사용료 요율의 변경, 그 밖에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1절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

- **제44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 2. 공유수면 매립지, 항만 유휴부지(遊休敷地) 등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성・공급에 관한 사항
 - 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 5.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다.

- 1.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 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 배후단지
- 2.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 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 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 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제7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 후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주체 기간 및 방법
 - 4. 부지 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 5.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6. 재원조달계획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8. 제54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만배후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그 계획을 기초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토지소유자는 항만배후단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①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절차 및 공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나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2. 18.>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후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 제49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51조제 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해양수산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역에 대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이 지연된 경우에는 1년의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 2.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제45조제2호에 따른 2종 항만배후단지(이하 "2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되어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항만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한다.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가 인접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4. 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 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 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 제5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의 일부(해당 항만배후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원형지 개발을 위한 공사의 착수 기한, 공사의 준공예정일, 사업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제46조제2항제8호에 따른 원형지 개발방향
 - 2.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 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 2. 사업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원형지개발자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⑧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원형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원형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 4. 그 밖에 원형지를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 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 ②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 재산법」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유재산법」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제45조제 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7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3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 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제58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항만 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 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 야 한다.
-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60조(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 ·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비관리청"은 "사업시행자"로, "제12조제5항 단서"는 "제58조제5항 단서"로,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5항"으로 본다.
 - ②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를 준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서와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로「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① 사업시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6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 2.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개발사업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 **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9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입주기업체 등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 운영

- **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 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 범위를 나누어 둘 이상의 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3.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③ 같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 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되기 전에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권자(같은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지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기관의 지정 및 변경 지정의 절차, 지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입주기업체의 관리 및 사업활동 지원
- 2. 공동시설의 유지 및 관리
-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제6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관리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 3.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입주자격)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 물류의 원활화 및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2022. 12. 27.>

- 1.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반입・반출되는 화물을 하역・운송・유통・판매・보관・전시하는 사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의2.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3.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 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4.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5.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6.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7. 항만친수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8. 항만의 관리 운영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고 남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및 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 제70조(우선입주) 관리기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8.>
 - 1. 항만물류 사업(컨테이너에 화물을 넣거나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물류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 수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 3.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제71조(입주계약)**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종 및 시설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주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입주계약 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3. 제7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폐업한 경우
- **제73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①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②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 (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 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 및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① 제6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7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거나 양수한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 1.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②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 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양도인이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인이 요청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 ④ 입주기업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거나 임대[전대(轉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
 -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자는 양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제69조 및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양수 계약 또는 임대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제75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①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자격을 갖추고 종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 및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제76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 **제77조(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비)**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동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비·운영비 외에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신설 2022. 12. 27.>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부담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27.> [제목개정 2022. 12. 27.]
- **제78조(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제42조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 제79조(비용부담 원칙)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청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가 항만의 관리 및 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0. 2. 18.>
 - ② 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비관리청이 부담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④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이 그가 필요하여 항만시설의 경미한 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단체나 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제55조를 준용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1조(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 제82조(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관리청에 사용료 등 납부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0. 3. 24.>

제7장 감독

-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 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2, 12, 27.>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 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 나.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다.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 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 마.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바. 제66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 2.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 3.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신고 및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착수시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착수시기 이내를 말한다)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받은 경우

- 6.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7.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
- 8. 사업시행자가 제5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 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1. 항만의 상황 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항만 내 화물 적체로 항만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사업장, 그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내용
 -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내용
 - 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자체점검의 내용(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 라.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 및 항만시설운영자의 항만시설 운영의 내용
 - 2.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항만의 관리·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출입검사의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출입검사의 계획이 알려지면 출입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성명, 출입검사의 시간, 출입검사의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86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항만시설에 장치(藏置)한 후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의 소유자에게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화물을 반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 해당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통보나 독촉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화물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기간이나 공고기간에 그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을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개정 2020. 2. 18.>
- ③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장치된 화물 중「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 제8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항만개발사업·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려는 자 등의 인적사항・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 ③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 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 29.>
 - ⑦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88조(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해(災害)로 인한 항만시설의 위험이나 항만 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항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재해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 현장에 필요한 토지・가옥・선박,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작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흙, 돌, 나무, 운반도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제89조(토지 등의 수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토지,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제7조에 따른면허어업,같은 법 제40조에 따른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신고어업, 그리고「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라면허를 받은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허가를 받은양식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하같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수있다. <개정 2020. 1. 29., 2020. 2. 18., 2022. 1. 11.>② 제10조제1항에 따른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항만배후단지 지정의고시가 있는경우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사업인정및같은법제22조에 따른사업인정의고시가있는것으로본다.다만,제10조제3항단서또는제48조제2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물건또는권리의세부목록을별도로공고·고시한경우에는해당공고·고시를한때에「공익사업을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 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裁決)의 신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해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2. 1. 4.>
- 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0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따른 항만배후 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한 사항은「도시개발법」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도시개발법」제28조제 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9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 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2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와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시·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1. 「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 2. 「주택법」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93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 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시·도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供託)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 2. 18.>
 -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불복하는 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⑤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 29., 2022. 1. 11.>
- **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84조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보칙

- 제96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 1.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 2.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항만구역을 반영하려는 경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 3. 항만구역,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경우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이나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서「광업법」,「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29., 2020. 2. 18.>
- 제97조(행위 제한 등)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부터 제 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98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한 경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공고한 경우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2021. 11. 30., 2022. 12. 27.>
 - 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3. 「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5. 「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분할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 7.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 단지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 8.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9. 「도로법」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10.「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 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11.「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 1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1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 15.「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16.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17. 「소하천정비법」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 18. 「수도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19. 「수산자원관리법」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 20.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 21. 「자연공원법」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 22. 「전기사업법」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4.「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25.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 26. 「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 1.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 2. 제44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 2023. 5. 16.>
- 1.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
-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내용을 변경승인할 때
- 3.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내용을 변경승인할 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2. 1. 4.>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3. 5. 16.>
- 제99조(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②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 2. 제50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
- 3. 제72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의 해지
- 4.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 제101조(권리·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0. 2. 18.>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2020. 2. 18.>
-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① 항만건설 관련자는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항만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 2. 항만건설기술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 3. 항만건설에 따르는 조사・설계・감리・기술에 관한 용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4. 항만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 2. 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3.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 4.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 5.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 6. 그 밖에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업무
- 제10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항만공사법」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한국해운조합법」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한국수자원공사법」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05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 료를 내야 한다.
- **제106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 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제107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 4.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사업을 한 자
- 5.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후 제73조제1항에 따른 잔무 처리 외에 그 사업을 한 자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18.>

-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 2.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 3. 제17조를 위반하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 5. 제28조를 위반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
- 6.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 8. 제51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8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 12, 27,>

- 1. 제12조제5항 단서 또는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 자
-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자
-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4. 제40조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자
- 5.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자
- 6.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사용한 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7.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 8. 항만배후단지에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9.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제1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하는 협회,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1.

4.>

-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양수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점검 결과 정비·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기록과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자
- 5.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6. 제34조제2항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7. 제35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자
- 8. 제35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작성·제출한 자
- 10.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1. 제73조제3항, 제74조제5항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 12.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자
-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14. 제8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 15. 제87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 16. 제10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질문 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자
- ②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7호·제8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22. 1. 4.>

부칙 <제19778호,2023.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 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